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수는 별지와 같다"를 "장학생의 정원은 관할구역별 의용소방대원수의 5/100로 한다"로 하고 (별지)를 삭제한다.

제4조(추천) "의용소방대(부녀의용소방대, 지역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 이하 "의소대"라 한다)당 2명 범위내"를 "소방서·군(소방서 미관할구역에 한한다. 이하 같다) 관할구역별 정원의 2배수 범위내"로 한다.

제5조(선발) ① 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군교육장의 의견을 들어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선발 결정한다.

1. 순직대원의 자녀
2. 공상대원의 자녀
3.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 서훈을 받은 대원의 자녀
4. 유공표창중 장관이상 상순위 표창을 받은 대원의 자녀
5. 장기근속 대원의 자녀
6. 대원의 학비부담 능력 유무
7. 학생의 학업성적 및 특기의 정도
8. 기타 추천당시 결정한 순위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 지역간의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 또는 군수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결정 결과를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액) "매년 50만원"을 "매년 60만원"으로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집행 및 지급) 중 ③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